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0. 10. 21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0년 10월 8일

나. 발 의 자: 오현숙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0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: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10. 19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오현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을 추진함에 있어 무료예방접종의 대상자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(정기예방접종 → 필수예방접종)
-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을 명시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제4항)
-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기간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효력 발생(부칙 제2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의 대상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9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용어를 정비하고
  - 안 제9조제4항을 신설하여 무료예방접종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의 요청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  -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가을철 인플루엔자와 동시 유행할 경우 합병증 발생과 입원자 증가로 의료인, 병상 등 의료자원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가 시급한 실정임.
  - 이를 위해 서울시 사업으로 대민접촉의 빈도가 높은 인플루엔자 위험직군에 대한 무료접종을 2020년 11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, 대상자에 대한 무료접종 확대를 위해서는 사전에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바,
- 검토 결과
  - 상위 법령에 부합되며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적시성이 요구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오현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262호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: 2020년 10월 일

발의자: 오현숙 의원 외 4명

## 1. 제안이유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을 추진함에 있어 무료예방접종의 대상자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 (정기예방접종 → 필수예방접종)
- 나.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을 명시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(안 제9조제4항)

## 3. 개정안 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시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
- 다. 입법예고 : 2020. 10. 8. ~ 10. 13.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“(정기예방접종)”을“(필수예방접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정기예방접종”을 각각 “필수예방접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정기예방접종 대상”을 “필수예방접종 대상”으로, “정기예방접종을”을 “필수예방접종을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(이하 “무료 예방접종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 단,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.

1. 2020년 9월 30일 기준 영등포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한 보육시설 보육교사 및 종사자

나. 산후조리원 종사자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,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

센터 종사자 중 상시근무자

다. 시내버스, 마을버스, 택시회사, 개인택시 운전자 등 대중교통 운전자
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생활자와 종사자(환자 활동 도우미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근무자)

마. 환경미화원(직영,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운전자 포함)

바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(150세대 이상) 공동주택 경비원(외부 근무자)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9조제4항의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정기예방접종)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<u>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<u>정기예방접종을</u>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 구청장은 <u>정기예방접종 대상</u>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<u>정기예방접종을</u> 사전에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9조(<u>필수예방접종</u>) ① ----- ----- ----- <u>필수예방접종</u>-----.</p> <p>② ----- <u>필수예방접종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필수예방접종 대상</u> ----- ----- <u>필수예방접종을</u> ----- -----.</p> <p>④ 구청장은 <u>예산의 범위 내에서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<u>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(이하 “무료 예방접종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</u> 단, <u>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.</u></p> <p><u>1. 2020년 9월 30일 기준 영등포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</u></p>

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한 보육시설 보육교사 및 종사자

나. 산후조리원 종사자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,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중 상시근무자

다. 시내버스, 마을버스, 택시회사, 개인택시 운전자 등 대중교통 운전자
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생활자와 종사자(환자 활동 도우미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근무자)

마. 환경미화원(직영,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운전자 포함)

바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

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  
리대상(150세대 이상) 공동  
주택 경비원(외부 근무자)